

#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 [김동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8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의자 : 김동훈, 한근수, 박은경,  
이정애, 정현미, 원주영,  
박경원

### 1. 제안 이유

남양주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구축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나.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민간의 정책 참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마. 디지털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바.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사. 디지털취약계층의 복지 연계 서비스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아.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부칙 안 제2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

가. 「디지털포용법」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다.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는 「디지털포용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포용의 실태 및 정책성과 분석

3.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

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5.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6.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3. 교육 인력의 발굴·지원·양성
4. 홍보 및 포상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 또는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지털 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9조(디지털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창업진로상담

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 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및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복지 연계 서비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 외에도 디지털취약계층이 복지·보건·일자리 등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연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 사업의 효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

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디지털포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디지털 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연차별 이행계획 등은 3년 주기로 수립하는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이후 파악이 가능하여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장 표용자

☑ 「디지털포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표준화·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 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폐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